

의안번호 제114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논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17. 12. 1.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114호 제출연월일: 2017. 12. 1. 제 출 자: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 국가정책에 따른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의한 인력충원 정원증가분을 직급·직렬별 정원에 반영하고

○ 한시기구인 미래발전사업단 신설을 통한 국가국방산업단지 지정 추진 등을 지원하고, 논산지역 특성에 적합한 미래발전 전략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우리지역의 행정 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 신설에 따른 미래발전사업단 부서명 변경 및 존속기한 정비

- 존속기한: 2017. 12. 31 ⇒ 2019. 12. 31

- 단 명칭: 희망논산추진단 ⇒ 미래발전사업단

- 부서명칭 : 국방대이전지원과. 미래사업과 ⇒ 국방협력과. 미래사업과

나. 담당관의 명칭 변경

- 부서명칭: 예산담당관 ⇒ 참여예산실

감사담당관 ⇒ 청렴감사실

홍보담당관 ⇒ 열린홍보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3)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아님
- (4)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 (가) 예고기간: 2017. 11. 23.~2017. 11. 27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 (6) 충청남도소관실과 :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041-635-2332)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장, 사업단장 및 실장·담당관·과장의 직급 등)"을 "(국장, 사업단장 및 실장·과장의 직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장·담당관·과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제3조 중 "희망논산추진단"을 "미래발전사업단"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희망논산추진단)"을 "(미래발전사업단)"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희망논산추진단에 국방대이전지원과"를 "미래발전사업단에 국방협력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희망논산추진단장"을 "미래발전사업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국방협력지원 사업 발굴 및 추진 관련 사항
- 2. 국방혁신도시 조성 관련 사항
- 3. 국방산업단지 기업유치 추진 및 협력 관련 사항
- 4. 국방산업단지 관련 시민단체와 협력 기반구축 및 협력 관련 사항
- 5. 국방대학교 상생발전사업 수립 및 추진 관련사항
- 6. 국방대학교 협력 사업 관련 사항
- 7. 국방대학교 지역민 융화 사업 관련 사항
- 8. 민·관·군 지역협력에 관한 사항
- 9. 민·관·군 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원 관련 사항
- 10. 호남고속철도 KTX 훈련소역 신설 추진
- 11. 육군훈련소 연계 관광자원화 추진
- 12. 미래발전 사업 발굴 및 추진 관련 사항

- 13. 탑정호 관광명소화(복합레져단지 조성)추진
- 14. 역사문화 관광명소화 사업 총괄

제6조제2항에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5.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16.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 17. 강경 근대문화 관광명소화 사업 관련 사항

제7조 중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을 "참여예산실, 청렴감사실, 열린홍보실"로, "예산담당관"을 "참여예산실"으로, "감사담당관"을 "청렴감사실"으로, "홍보담당관은"을 "열린홍보실은"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947명"을 "98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933명"을 "966명"으로 한다.

별표 6.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을 "참여예산실, 청렴감사실, 열린홍보실"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나목 중 "희망논산추진단"을 "미래발전사업단"으로 한다.

② 논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예산담당관"을 "참여예산실장"으로 한다.

③ 논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담당관·과장급"을 "과장급"으로 한다.

같은 조제4호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④ 논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장·담당관·과장"을 "실장·과장"로 한다.

⑤ 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희망논산추진단장, 예산담당관"을 "미래발전사업단장, 참여예산실장"으로 한다.

⑥ 논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실장, 담당관, 과장"을 "실장, 과장"으로 한다.

⑦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예산담당관"을 "참여예산실장"으로 한다.

⑧ 논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예산담당관"을 "참여예산실장"으로 한다.

⑨ 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예산담당관"을 "참여예산실장"으로 한다.

⑩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을 "참여예산실, 청렴감사실, 열린 홍보실"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희망논산추진단"을 "미래발전사업단"으로 한다.

①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예산담당관"을 "참여예산실장"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② 논산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4항 중 "감사담당관"을 각각 "청렴감사실장"으로 한다.

③ 논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

제7조제2항 중 "감사담당관"을 "청렴감사실장"으로 한다.

⑭ 논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홍보담당관"을 각각 "열린홍보실장"으로 한다.

- ⑤ 논산시 사이버 논산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 중 "예산담당관, 홍보담당관"을 "참여예산실장, 열린홍보실장"으로 한다.
- (16) 논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1호 중 "예산담당관"을 "참여예산실장"으로 한다.
- ① 논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국·과 및 담당관등"을 "국·실·과 등"으로 한다.
- ⑧ 논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중 "실·담당관과소·읍면·동장"을 "실·과소·읍면·동장"으로 한다.
- ① 논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 중 "희망논산추진단장"을 "미래발전사업단장"으로 한다.
- ②) 논산시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3항 중 "감사담당관"을 "청렴감사실장"으로 한다.
- ②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3 및 별표4 중 "홍보담당관"을 각각 "열린홍보실"로 한다.
- ② 논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4항 및 제23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으로 한다.
- 제1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② 논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중 "예산담당관"을 "참여예산실장"으로 한다.
- 24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항제1호다목 중 "예산담당관"을 "참여예산실장"으로 한다.
- ② 논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중 "예산담당관"을 "참여예산실장"으로 한다.
- ② 논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② 논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 및 제6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②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4항제1호 중 "예산담당관"을 "참여예산실장"으로 한다.
- ③ 논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③ 논산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기업벤처기 업부장관"으로 한다.
- ② 논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③ 논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제2호 중 "홍보담당관"을 "열린홍보실장"으로 한다.
- ➂ 논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③ 논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를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③ 논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예산담당관"을 "참여예산실장"으로 한다.

- ③ 논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를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③ 국방대학교 이전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하다.

제8조제2항 중 "희망논산추진단 국방대이전지원과장, 희망논산추진단 국방대이전 지원과 업무담당주사"를 "미래발전사업단 국방협력과장, 미래발전사업단 국방협력 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2	소 괸	: 부	々	} 1	명		
입	자 :	치 행	정고	가 장	임	승	택
안	인	사	팀	장	김	민	영
자	담	Ę	<u>.</u>	자	황 (74	준 ·6-52	용 33)

[^{별표 6}] <u>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u>(제**22조제1**항 관련)

- 11	<u>.</u> n			집행기관			의회 시	무기구
구 분	총 계	소 계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소계	의회 사무국
총 계	980	966		90	66	14	14	
정무직 계	1	1	1					
시 장	1	1	1					
일반직 계	937	923		92	23		14	14
3급	1	1	1					
4급	5	4	3	1	1		1	1
5급	52	50	27	6	2	15	2	2
6급 이하	879	868		80	68		11	11
별정직 계	2	2		2	2			
6급상당 이하	2	2		;	2			
연구직 계	4	4		4	4			
연구관								
연구사	4	4						
지도직 계	36	36		3				
지도관	4	4		,				
지도사	32	32		3	2			

[별표 7] <u>한시기구의 직급별 정원 및 운용시한(제22조제1항 관련)</u>

관리기관별	소속부서	구된	į.	정원	0 Ω λ1 5 1.	H) T
선디기선일	<u> </u>	직 종	직급	7875	운용 시한	비고
	총계	총 7	계	1		
	총 계	일반직	4급	1		
본청	미래발전사업단 (국방협력과)	일반직	4급	1	2019년 12월 31일까지	

□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혅 제2조(국장, 사업단장 및 실장·담당관·과장의 제2조(국장, 사업단장 및 실장·과장의 직급 등) 직급 등) ① 시 본청의 국장, 사업단장의 직급, 본청 · 직속기관의 과장 등 보조 · 보좌기관의 ---- 실장·과장-----직급과 실장 · 담당관 · 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제3조(국·단의 설치)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제**3**조(국·단의 설치) ------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친절행정국, 행복도시국, 희망논산추진단을 둔다. ----- 미래발전사업단----. 제6조(희망논산추진단) ① 한시기구인 희망논산 | 제6조(미래발전산업단) ① ----- 미래발전사 업단에 국방협력과-----추진단에 국방대이전지원과. 미래사업과를 둔다. ② 한시기구인 희망논산추진단장은 다음 사항 ② ----- 미래발전사업단장-----을 분장한다. 1. 국방대 이전 기관간 협조 및 행정지원 총괄 1. 국방협력지원 사업 발굴 및 추진 관련 사항 관련 사항 2. 국방클러스터(국방산업단지) 관련 사항 추 2. 국방혁신도시 조성 관련 사항 진 관련 사항 3. 국방대 관련 도시기본계획 관련 협의 지원 3. 국방산업단지 기업유치 추진 및 협력 관련 관련 사항 사항 4. 국방대 이전 기반시설지원관련 종합계획 수 4. 국방산업단지 관련 시민단체와 협력 기반구 립 및 시행 관련 사항 축 및 협력 관련 사항 5. 국방대 관련 기반시설 및 도로망 구축등 주 5. 국방대학교 상생발전사업 수립 및 추진 관 련사항 민편익시설 설치관련사항 6. 국방대 관련 수용지역 이주에 따른 이주대책 6. 국방대학교 협력 사업 관련 사항 수립 및 시행 관련사항 7. 국방대 관련 이주민 생활대책 수립 관련 사 7. 국방대학교 지역민 융화 사업 관련 사항

혅 했 개 정 안 항 8. 국방대 관련 부동산 투기방지 및 지도단속 8. 민관군 지역협력에 관한 사항 관련 사항 9. 민 · 관 · 군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9. 만관군 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원 관련 사항 10. 육군훈련소 연계 관광자원화 추진 10. 호남고속철도 KTX 훈련소역 신설 추진 11.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1. 육군훈련소 연계 관광자원화 추진 12.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12. 미래발전 사업 발굴 및 추진 관련 사항 13. 호남고속철도 KTX 훈련소역 신설 추진 13. 탑정호 관광명소화(복합레져단지 조성)추진 14. 탑정호 관광명소화(복합레져단지 조성)추진 14. 역사문화 관광명소화 사업 총괄 〈신 설〉 15.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신 설〉 16.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신 설〉 17. 강경 근대문화 관광명소화 사업 관련 사항 제7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단위 행정기구의 제7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단위 행정기구의 설치) 시 행정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에 속 하지 아니하는 전략기획실, 예산담당관, 감사 ----- 참여예산실. 청렴 담당관, 홍보담당관을 두며, 전략기획실은 시 감사실. 열린홍보실-----정기획·정책개발·정책평가·성과평가 사무를, 예산담당관은 예산·재정지원·의회법무·규제개 참여예산실은 ---------- <u>청렴감사</u>실은 -----혁·통계 사무를, 감사담당관은 감사·조사·계약 | ----- 열린홍보실은 ---심사·특사경전담 사무를, 홍보담당관은 홍보 기획 · 언론홍보·뉴미디어 사무를 분장한다. 제20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제20조(정원의 총수) -----의 총수는 947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 호와 ----- 980명-----같이 구분한다. 1. ----- 966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933명

2. (현행과 같음)

2. (생략)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별표 6】										【별표 6】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 · 직렬별 정원표										
	(제22	조제	1항	관련	1)						(제22	조제	1항	관련	1)		
			줕	행기	란		의 사무	회 ·기구					걑]행기	란		의회 사무기구		
구 분	총 계	소계	본청	직속 기관	사업 소	읍면 동	소계	의회 사무 국	-	1	분	총계	소계	본청	직속 기관	사업 소	읍면 동	소계	의회 사무 국
총계	947	933		93	33		14	14	\$	Ė	계	980	966		96	56		14	14
정무직계	1	1	1						정	무즈	계	1	1	1					
시 장	1	1	1						ス		장	1	1	1					
일반직계	904	890		89	90		14	14	일	· 신즈]계	937	923		92	23		14	14
3급	1	1	1							3 <u>두</u>	<u>1</u>	1	1	1					
4급	5	4	3	1			1	1		4 -	<u>1</u>	5	4	3	1			1	1
5급	52	50	27	6	2	15	2	2		5 <u>-</u>	<u>1</u>	52	50	27	6	2	15	2	2
6급 이하	846	835		83	35		11	11		6일 이전	1 하	879	868	68 868			11	11	
별정직계	2	2		2	2				望	정조	계	2	2		2	2			
6급상당 이하	2	2		2	2				6급상당 2 2 2										
연구직계	4	4		4	1				연	72]계	4	4		4	Į.			
연구관									Ŷ	1구	관								
연구사	4	4		4	1				Ó	17	사	4	4		4	Į.			
지도직계	36	36		3	6				지	도즈]계	36	36		3	6			
지도관	4	4		4	1				7	도	관	4	4		۷	Į.			
지도사	32	32						7	도	사	32	32		3	2				

□ 신・구조문대비표

		현	ठ	Ŋ		개 정 안							
[별표	[7]					[별표 7]							
<u>한시기구의 직급별 정원 및 운용시한</u> (제22조제1항 관련)							<u>한시기구의 직급별 정원 및 운용시한</u> (제22조제1항 관련)						<u>한</u>
관리	2 & H 31	구	분	7) ()	00012	nj	관리	› ኤዝ ነ ነ	구	분	71.01	0.0.171	יויי
 기관 별	소속부서	직 종	직급	정원	운용시한	비고	기관 별	소속부서	직 종	직급	정원	운용시한	비고
20	· · 계	총계 1				- 계	총계		1				
	7-11	일반직	4급	1			0	71	일반직	4급	1		
본청	희망논산 추진단 (국방대이 전지원과)	일반직	4급	1	<u>2017년</u> <u>12월</u> <u>31일까지</u>		본청	<u>미래발전</u> <u>사업단</u> (국방 협력과)	일반직	4급	1	<u>2019년</u> <u>12월</u> <u>31일까지</u>	

붙임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정원의 총수)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되는 공무원 인건비를 2017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기준 단가(30,000천원)로 산정하고 매년 보수인상률 3.67% 적용
- 직급 변동에 따른 직급간 인건비 차액을 반영하고 매년 보수인상률 3.67% 적용

나. 추계결과 : 5,543,894천원(5년)

ㅇ 평균인건비 : 5,543,894천원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7년 1인기준액	인원	금 액	연 도	합 계
합 계			1,030,326	5개년	5,543,894
기준인건비 기 준	30,000	33	990,000	5개년	5,326,911
직급 변경 <u>차액</u> (9급 ⇒ 8급)	1,623	9	14,607	5개년	78,596
직급 변경 <u>차액</u> (8급 ⇒ 7급)	2,455	6	14,730	5개년	79,258
직급 변경 <u>차액</u> (7급 ⇒ 6급)	3,663	3	10,989	5개년	59,129

※ 2017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기준 복지직 공무원 단가 3천만원 적용

3. 작성자

자치행정과장 임 승 택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X	에 입						
	시 비						
X	출	1,030,326	1,068,139	1,107,340	1,147,979	1,190,110	5,543,894
인건비		1,030,326	1,068,139	1,107,340	1,147,979	1,190,110	5,543,894
○ 보수	<u>`</u>	1,030,326	1,068,139	1,107,340	1,147,979	1,190,110	5,543,894
7	재원 조달	1,030,326	1,068,139	1,107,340	1,147,979	1,190,110	5,543,894
	소 계	1,030,326	1,068,139	1,107,340	1,147,979	1,190,110	5,543,894
의존	보조금						
재원	지방교부세	1,030,326	1,068,139	1,107,340	1,147,979	1,190,110	5,543,894
	소 계						
자체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채무브	기 타 부담, 민자 등)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제22조, 제112조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 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 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